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86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김용태·박준태·우재준

김위상 • 한기호 • 박충권

이성권 · 서천호 · 김성원

조은희 · 송석준 · 박정하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·누적으로 졸 업하게 됨.

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.

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
·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
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'온라인학교'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'온라인학교'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, 학교 설립기준, 학칙 제·개정, 학급 편성, 학교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 등 '온라인학교'의 설립·운영에 필

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 60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단서 중 "포함한다)"를 "포함한다)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"로 한다.

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1까지를 각각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2까지로 하고, 제4장제8절에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4(온라인학교) ①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(이하"온라인학교"라 한다)로서 제4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24조제4항, 제31조제2항·제3항,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, 학칙, 학급 편성, 그 밖에 설립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햀 개 정 안 제60조(각종학교) ① (생 략) 제60조(각종학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 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(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를 포함한다)는 그러하지 아니 -- 포함한다)와 제60조의4에 따 하다. 른 온라인학교-----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60조의4(온라인학교) ①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・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 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 종학교(이하 "온라인학교"라 한 다)로서 제4조제1항, 제8조제2 항, 제24조제4항, 제31조제2항 · 제3항, 제34조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.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, 학

	칙, 학급 편성, 그 밖에 설립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<u>제60조의4</u> ~ <u>제60조의11</u> (생 략)	<u>으로 정한다.</u> <u>제60조의5</u> ~ <u>제60조의12</u> (현행
	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1까지 와 같음)